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7,298,811	13,118,964
일반회계		416,023,697	12,480,711
특별회계		21,275,114	638,253
기타특별회계		21,275,114	638,25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4,791	14,844
	주차장 특별회계	12,128,022	363,84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67,350	29,021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500,000	45,000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50,600	10,518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5,834,351	175,03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01,352천원(일반 3,345,061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756,29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서 자원 표기

[국] 국고보조금, [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금, [시] 시비보조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구] 자체재원